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104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김도영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1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9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7.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110,021,9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21,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항소장에 취소청구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2019. 12. 5.자 준비서면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0번째 줄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있고,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경 피고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20.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 불기소이유서에 ‘전 세입자인 F는 2018. 2. 7. 전세계약이 만료되어1) 피의자(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현 세입자 L은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가 받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전 세입자인 F에게 교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인중개사 E은 수사기관에 F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작성해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별지

부동산 목록

경기도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K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경사 스라브지붕 20층 아파트

1층 304.60㎡

2층 304.60㎡

3층 304.60㎡

4층 304.60㎡

5층 304.60㎡

6층 304.60㎡

7층 304.60㎡

8층 304.60㎡

9층 304.60㎡

10층 304.60㎡

11층 304.60㎡

12층 304.60㎡

13층 304.60㎡

14층 304.60㎡

15층 304.60㎡

16층 304.60㎡

17층 304.60㎡

18층 304.60㎡

19층 304.60㎡

20층 304.60㎡

지층 507.67㎡(대피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구리시 I 대 4556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K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59.9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5569.2분의 34.9465. 끝.

1) 임대차계약서(을 제11호증의 1)에 기재된 임대기간의 종기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한 것이다.

